

2025년도 서울특별시 영등포문화재단 출연 동의안

심 사 보 고 서

2025. 6. 27.

행정위원회

1. 심사경과

- 가. 발의일자: 2025년 6월 2일
- 나. 발 의 자: 영등포구청장
- 다. 회부일자: 2025년 6월 9일
- 라. 상정일자: 제261회 영등포구의회 제1차 정례회
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(2025. 6. 13.) 상정 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(제안설명자: 행정국장 노상옥)

가. 제안이유

- “2025년도 서울특별시 영등포문화재단 출연 동의안”에 대하여 「지방재정법」 제18조제3항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- 출연대상: (재)영등포문화재단
- 관련근거
 - 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(재정 지원)
 - 서울특별시 영등포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(기본재산의 조성), 제13조(운영재원 등)
 - 서울특별시 영등포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(운영 및 관리)
 -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작은도서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(설립 및 위탁)
- 사업내용
 - 공공 및 작은도서관 시설 운영·관리 등 독서문화 진흥 사업
- 출연 필요성
 - 여의도브라이트도서관('25.12월 개관 예정)의 인건비, 운영비를 확보하여 도서관의 원활한 개관 준비 및 운영 도모
 - 신길도서관 냉난방시스템(GHP) 가동에 필요한 가스요금 부족분을 확보함으로써 쾌적

한 도서관 이용환경 조성

마. 출연금의 범위 및 내용(소요예산)

- 도서관 운영·관리 및 독서문화 진흥 사업: 330,047천원
- 여의도브라이트도서관 운영: 319,047천원
- 신길도서관 운영: 11,000천원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(전문위원: 강용철)

- 본 서울특별시 영등포문화재단 출연금 동의안은 「지방재정법」 제18조제3항에 따라 (재)영등포문화재단 출연사업에 대하여 우리구 의회의 의결을 받으려는 것으로서,
- 영등포문화재단에 대한 출연금액의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아래 표와 같음.

(단위: 천원)

출연금액	세부내역	
330,047	여의도브라이트도서관 인건비	135,920
	여의도브라이트 도서관 기본경비 및 문화사업비	183,127
	신길도서관 공공운영비	11,000

- 여의도브라이트도서관은 올해 12월 개관 예정으로 그에 따른 인건비·운영비 등을 확보하여 도서관의 원활한 개관 준비 및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며, 신길도서관('25.6. 개관한 신길책마루문화센터 내 위치)은 냉난방시스템(GHP) 가동에 필요한 가스요금을 확보함으로써 쾌적한 도서관 이용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이므로 구민의 문화 향유 환경 조성 차원에서 사업비 출연의 필요성이 인정됨.
- 아울러, 지방자치단체는 「지방재정법」 제18조제2항에 따라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 출연을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바, 본 동의안에 대한 출연여부는 「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20조와 「서울특별시 영등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, 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에 근거하여 출연이 가능하다고 할 것임.
- 다만, 위 출연 동의안은 사업에 대한 출연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며 출연 금액을 확정하는 절차는 아니므로 출연 금액은 추후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총 예산액, 사업별 우선순위 등을 종합 검토하여 확정되어야 할 것임.

4. 심사결과: 원안 가결

2025년도 서울특별시 영등포문화재단 출연 동의안

의안 번호	제 536 호
----------	---------

제출연월일: 2025. 6. .

제 출 자 : 영등포구청장

1. 제안이유

“2025년도 서울특별시 영등포문화재단 출연 동의안”에 대하여
「지방재정법」 제18조제3항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출연대상: (재)영등포문화재단

나. 관련근거

- 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(재정 지원)
- 서울특별시 영등포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(기본재산의 조성), 제13조(운영재원 등)
- 서울특별시 영등포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(운영 및 관리)
-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작은도서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(설립 및 위탁)

다. 사업내용

- 공공 및 작은도서관 시설 운영·관리 등 독서문화 진흥 사업

라. 출연 필요성

- 여의도브라이트도서관('25.12월 개관 예정)의 인건비, 운영비를 확보하여 도서관의 원활한 개관 준비 및 운영 도모
- 신길도서관 냉난방시스템(GHP) 가동에 필요한 가스요금 부족분을 확보함으로써 쾌적한 도서관 이용환경 조성

마. 출연금의 범위 및 내용(소요예산)

- 도서관 운영·관리 및 독서문화 진흥 사업: 330,047천원
 - 여의도브라이트도서관 운영: 319,047천원
 - 신길도서관 운영: 11,000천원

※ 2025년도 영등포문화재단에 대한 출연은 2025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통해 확정

3. 참고사항

○ 관련규정

- 지방재정법 제18조(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)
- 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(재정 지원)
- 서울특별시 영등포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(기본재산의 조성), 제13조(운영재원 등)
- 서울특별시 영등포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(운영 및 관리)
-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작은도서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(설립 및 위탁)

참 고 사 항

가. 지방재정법

제18조(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)

-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.
-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 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.
-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.

나. 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

제20조(재정 지원)

- ① 지방자치단체는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출자·출연 기관에 출자금·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.
-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4조에 해당하거나 해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출자·출연 기관에 대해서는 재정 지원을 할 수 없다.
- ③ 출자금·출연금 또는 보조금의 교부·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다. 서울특별시 영등포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

제5조(기본재산의 조성)

- ① 재단의 기본재산은 영등포구(이하 “구”라 한다)의 출연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조성한다.
- ② 구는 재단의 설립·시설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재단에 출연할 수 있다.

제13조(운영재원 등)

- ① 재단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구의 출연금, 재단사업 수입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.
- ② 구청장은 재단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운영비 및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.

마. 서울특별시 영등포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

제5조(운영 및 관리)

- ① 도서관의 운영 및 관리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(이하 “구청장”이라 한다)이 한다. 다만,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도서관 운영과 시설물 관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.
-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면 도서관의 운영·관리에 필요한 운영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바.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작은도서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

제7조(설립 및 위탁)

- ③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작은도서관 운영 및 관리를 법인·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으며, 위탁에 대해서는 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의 해당 규정을 준용한다.